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일정표 (1년 이상 근로자)

입력	휴가 사용기간 만료일(소멸일)	2026-12-31	← 회계연도 기준이면 12월 31일
입력	1차 촉구서 수령일(근로자)		← 실제로 받은 날을 적으면 회신기한이 계산됩니다

연번	단계	근거	기한(자동 계산)	비고
1	1차 촉구 기간 시작	법 제61조①1호	2026-07-01	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
2	1차 촉구 기간 종료	법 제61조①1호	2026-07-10	기준일부터 10일 이내
3	근로자 회신 기한	법 제61조①2호	(수령일 입력)	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4	2차 지정 통보 기한	법 제61조①2호	2026-10-31	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

※ 모든 기한은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을 기준으로 달력 개월(EDATE)로 역산합니다. 예를 들어 12월 31일 소멸이면 1차 촉구는 7월 1일~7월 10일,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.
※ 연차사용촉진은 빨리 보낼수록 좋은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법정 촉구기간 안에서 가능한 앞쪽 날짜에 진행하세요.
※ 사용기간 만료일은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(입사일 기준 / 회계연도 기준)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일정표 (1년 미만 근로자)

입력	입사일	2026-03-02	← 이 칸만 바꾸세요
	최초 1년 만료일	2027-03-01	입사일부터 1년
입력	촉구서 수령일(근로자)		← 회신기한 계산용

연번	단계	근거	기한(자동 계산)	비고
1	1차 촉구 기간 시작	법 제61조②1호 본문	2026-12-02	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
2	1차 촉구 기간 종료	법 제61조②1호 본문	2026-12-11	기준일부터 10일 이내
3	근로자 회신 기한	법 제61조②2호 본문	(수령일 입력)	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4	1차분 지정 통보 기한	법 제61조②2호 본문	2027-02-01	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
5	추가발생분 촉구 시작	법 제61조②1호 단서	2027-02-02	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
6	추가발생분 촉구 종료	법 제61조②1호 단서	2027-02-06	기준일부터 5일 이내
7	추가발생분 통보 기한	법 제61조②2호 단서	2027-02-19	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

※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므로 1차 촉구 뒤에도 휴가가 더 발생합니다. 그 휴가에는 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단서·제2호 단서의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(5~7행).
※ 기한은 모두 최초 1년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을 기준으로 달력 개월(EDATE)로 역산합니다. 개월을 30일·90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.
※ 법정 촉구기간 안에서 가능한 앞쪽 날짜에 진행하세요.